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2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 2)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 3) 설치연도 : 199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담보-업체당 1억원 이내, 신용-업체당 5천만원 이내

다.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 사유

- 2021년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2021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증가

2)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3,553,507	430,394	3,855,554	3,425,160	3,983,901

-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 예산	변경 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3,407,722	5,279,827	1,872,105

- 2022년 기정 예산 3,407,722천원에서 5,279,827천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316,972천원에서 2,189,077천원으로 증액 편성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407,722	5,279,827	(증) 1,872,105	
일반회계전입금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	11,483	11,483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84,443	1,284,443	-	
예치금회수	2,111,796	3,983,901	(증) 1,872,105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407,722	5,279,827	(증) 1,872,105	
출 연 금	750,000	750,000	-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338,000	338,000	-	
일반운영비	2,750	2,750	-	
민간융자금	2,000,000	2,000,000	-	
예 치 금	316,972	2,189,077	(증) 1,872,105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4)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2년말 조성액 (잔 액)
5,279,827		3,090,750		2,189,077
· 이 자 수 입 : 11,483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1,284,443 · 예 치 금 회 수 : 3,983,901	-	· 출 연 금 : 750,000 · 이 차 보 전 : 338,000 · 민간융자금 : 2,000,000 · 일반운영비 : 2,750	=	· 2023년도로 이월(예치금)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기금의 운용·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